KOTRA자료 20-234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특허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인구 2억7천만명의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제4위 인구 대국이며,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의 인구 밀도는 세계 제1위이다. 인구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시장 같으나 2019년말 국민소득 US$4,000에 주민 간 소득 격차로 인구에 비해 구매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를 받은 영향으로 법체계는 대륙법(성문법) 제도를 그대로 물려 받았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은 네덜란드 식민통치기인 1840년대에 처음 제정되어 현재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특허법,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법, 전자회로 디자인법 및 상업비밀법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상품 또는 불법 복제의 형태로 여전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적지 않으며 정부 당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위조상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문제 의식이 약함

(ii) 위조상품 생산자 혹은 매도자만 처벌하며 위조상품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제도적인 문제

(iii)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이나 해외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의 매입이 매우 용이한 환경

(iv) 상품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보다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향

(v) 위조상품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의 위조상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실한 수익을 올리려는 상인의 욕망

(vi) 높은 진품 가격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은 (i) 프린터 잉크(49.4%), (ii) 의류(38.90%), (iii) 가죽 제품(37.20%), (iv) 컴퓨터 및 랩톱용 소프트웨어(33.50%), (v) 위조 화장품(12.60%), (vi) 위조 음식 및 음료수(8.50%) 및 (vii) 의약품(3.80%)으로 조사되어 있다. 위조상품 피해자는 지식재산권 위반자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표권 등록 말소 소송

상표권 등록 말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i) 상표권 보유자, (ii) 검사, (iii) 소비자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재단법인, (iv) 공식 종교 단체이며, 상표 등록 말소 소송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으나 악의의 등록(남의 상표를 등록) 요소가 있거나 문제의 상표가 국가의 이념, 법규, 도덕, 종교, 품위,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시한제한 없이 언제라도 상표등록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 등록 말소 청구 소송은 일반법원이 아닌 상업법원에 한다. 인도네시아에는 5개 지역에 상업법원이 설립되어 있다. (i) 중부 자카르타 상업법원은 자카르타 특별 주, 서부자바주, 반텐주, 남부수마트라주, 방가벌리뚱주, 람풍주 및 서부 칼리만탄주를 관할하며, (ii) 마까사르 상업법원은 남부술라웨시주, 동남 술라웨시주, 중부술라웨시주, 북술라웨시주, 서부술라웨시주, 고론딸로주, 말루꾸주, 북부말루꾸주, 서부빠부아주, 중부빠뿌아주, 서부빠뿌아주를 관할하며, (iii) 수라바야 상업법원은 동부자바주, 남부깔리만딴주, 중부 깔리만 딴주, 동부깔리만딴, 발리주, 서부누사떵가라주, 동부누사떵가라주를 관할하며, (iv) 스마랑 상업법원은 중부자바주와 족자카르타 특별주를 관할하며, (v) 메단 상업법원은 아쩨특별주, 북부수마뜨라주, 리아우주, 리아우제도주, 서부 수마뜨라, 벙꿀루주와 잠비주를 관한다. 상표 등록 말소 소송 청구는 지역에 따라 소송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지역의 상업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외국 상표의 보유자는 등록 상표 보유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상업법원에 등록 상표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중 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중부 자카르타 상업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심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 승인을 얻어 최장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에 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파기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파기청구 파일을 접수한지 90 일 이내에 파기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확정판결문이 상표 등록 말소이면 법무부 장관은 공식 판결문 사본을 접수하는 대로 상업법원의 판결대로 해당 상표등록을 말소하고 상표 공보에 공시해야 한다.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권리 침해를 받은 상표권 보유자 보유자는 상업법원에 다음과 같이 잠정처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i) 상표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유통 시장 진입(수입 포함) 금지, (ii)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증거의 보존 신청, (iii) 범법 혐의에 의한 증거 인멸 금지, (iv)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 범법 중지 신청, 잠정 처분 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가치에 비례한 현금 및 / 또는 은행 보증의 형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 청구 이외에 등록 상표 사용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협상, 중재, 조정 등 대안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자는 (i) 지식재산권 보유자 및/또는 라이선스 보유자, (ii) 저작자 및/또는 라이선스 보유자, (iii) 전국 단위 집단 관리 기관, (iv) 지역 집단 관리 기관, (iv) 지식재산권 협회, (v) 지식재산권 보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vi) 지식재산권 보유자 및/혹은 라이선스 보유자의 법정대리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에 적을 둔 Original BUFF S.A. 회사의 유명 상표를 인도네시아인 JEMMY SETIYUWONO가 몰래 등록한 것을 Original BUF S.A. 회사가 자카르타 중부 상업법원에 상표등록 말소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했다.

Ⅰ 침해 대응 방안

상표 혹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범죄는 일반범죄가 아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국가의 수사권이 발생하는 친고죄이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이며 경찰에 형사 고소하는 방법과 법무부 지식재산권청 수사 및 해결국에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다. 경찰 조직은 중앙에 경찰사령부(경찰청), 주에 지방경찰청, 시/군/구에 경찰서, 동/면 단위에 경찰지서가 있으며, 필요한 곳에 파출소를 두고 있다. 이 경찰조직 중에 지식재산권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사관이 있는 곳은 경찰청과 지방 경찰청이며 그 이하 조직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수사관이 없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는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 경찰창이나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는 경찰청에 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법을 위배했다는 물적증거가 없으면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시 지식재산권을 위배했다는 물적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수사관은 형사고소자를 먼저 조사하고 고소자가 언급하거나 사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하고 피고소자를 조사한다. (i) 징역 최고 5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이거나, (ii)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iii) 재범이 우려되거나, (iv)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수사관이 판단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수사관의 재량이다. 수사단계 구속 기간은 (i) 1차구속 최장 20일: 수사관 전결, (ii) 2차구속 최장 40일 : 검사 전결, (iii) 3차구속 최장 30일:지방법원장 전결, (iv) 4차구속 최장 30일: 지방법원장 전결이다. (i)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ii) 범죄행위가 아니거나, (iii) 고소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iv) 피고소자가 사망하거나, (v) 공소 시효가 지났으면 수사를 중단한다.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2단계로 나눠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다. 1단계는 사건 파일 사본을 먼저 검찰에 보낸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파일을 검토해보고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보완 요청을 하거나(P-19)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는 통보서를 보낸다(P-21). 경찰이 검찰로부터 P-19를 받으면 신속하게 보완 수사를 해야 하며. P-21을 받으면 사건 파일 원본과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에 넘긴다.

지식재산권 범죄를 법무부 지식재산권청 지식재산권 수사국에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청 수사국에 근무하는 수사관은 모두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이며 경찰 수사관과 같이 조사, 체포, 구속, 수색, 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9,340 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와 7,100 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책이나 오프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책은 대동 소이하다.

따라서 현지 제도상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인 변리사(Konsultan Hak Kekayaan Intellektual Terdaftar/Konsultan HKI Terdaftar)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한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경우 변리사 자격증과 변호사 자격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현지 변리사·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CONTENTS

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법률 1

Ⅱ.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유통 상황 5

Ⅲ. 오프라인 시장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13

Ⅳ. 상표등록 말소 청구 소송 판례 21

Ⅴ. 법원의 잠정 처분결정서(Penetapan Sementara) 29

Ⅵ. 대안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33

Ⅶ.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형사 고소 37

1)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자 39

2) 형사 고소처 39

3) 경찰(Polisi)에 형사고소 39

4) 법무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
지식재산권청(Direktorat Jenderal Hak Kekayaan Intelektual)에 형사고소 44

Ⅷ. 온라인 시장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47

Ⅸ.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51

Ⅹ. 지식재산권 분야 현지 법률전문가 57

I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법률

0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법률 _ 03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0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법률

특허에 관한 2016년 법률 제13호(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특허법)

(i)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20호(Undang-Undang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상표법)

(ii) 저작권에 관한 법률 2014년 제 28호(Undang-Undang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저작권법)

(iii) 산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2000년 제31호(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산업디자인법)

(iv) 전자회로 디자인에 관한 법률 2000년 제32호(Undang-Undang Nomor 32 Tahun 2000 tentang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전자회로 다자인법)

(v) 상업 비밀에 관한 법률 2000년 제30호(Undang-Undang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상업비밀법)

II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유통 상황

01.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유통 상황 _ 07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01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유통 상황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Hak Kekayaan Intelektual/HKI)에 대한 보호는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위조상품 또는 불법 복제의 형태로 여전히 지식재산권 침해가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 당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법 복제, 표절 또는 상품 위조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지식재산권 전문 공무원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며 경찰 조직은 수도에 경찰청(Markas Besar Polisi Republik Indonesia(Mabes Plori), 주 단위에 지방경찰청(Polda), 시/군청 단위에 경찰서(Polres) 및 구/면/동 단위에 경찰지서(Polsek)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경찰지서나 경찰서에 고소하면 경찰지서나 경찰서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수사관이 없어서 정상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며,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가 수사관이 있는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이나 혹은 법무부(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Kemenkumham) 산하 지식재산권청(Direktorat Jenderal Hak Kekayaan Intelektual/Ditjen HKI)에 고소를 해야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지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 종류별로 자체 국가 법령과 국제 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실행력은 여전히 미미하다. 예를 들어, 미국 상공 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발표한 2020년 지식재산권 보호 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53개국 중 인도네시아가 46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또한 불법 복제가 만연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영화, 음악 앨범, 패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적상품을 판매하는 상가에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Oke Finance의 뉴스에 게재된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 법무부(지식재산권청) 지식재산권 수사 및 분쟁해결국(Direktorat Penyidikan dan Penyelesaian Sengketa)의 발표에 따르면 상품 위조 및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염려스러운 수준이며,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배척회

(Masyarakat Indonesia Anti Pemalsuan/MIAP)와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 경제대학(Fakultas Ekonomi Universitas Indonesia/FE UI)이 공동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 7 가지는 다음과 같다.

(ⅰ) 프린터 잉크 (49.4%)
(ⅱ) 의류 (38.90%)
(ⅲ) 가죽 제품 (37.20%)
(ⅳ) 컴퓨터 및 랩톱용 소프트웨어 (33.50%)
(ⅴ) 위조 화장품 (12.60%)
(ⅵ) 위조 음식 및 음료수 (8.50%)
(ⅶ) 의약품 (3.80%)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국가 경제(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손실은 65.1조 루피아(식음료 상품 1조 339억 루피아, 의류 및 가죽 상품 41 조 581억 루피, 의약품 및 화장품은 6.5조 루피아, 소프트웨어 및 잉크 상품은 3.6조 루피아)로 추산되며, 최고 4,240억 루피아의 원본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간접세 수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MIAP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인도네시아 국가의 경제적 손실(GDP)을 43.2 조 루피아로 추산했는데 5년 동안 1.5 배나 증가했다고 했다. MIAP의 Widyaretna Buenastuti회장에 따르면 4,240억 루피아는 임금 및 급여소득세 및 법인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계산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1일 CNN Indonesia의 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의 2019년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고발은 47건, 즉, 상표권 침해고발 34건, 저작권 침해 고발 7건, 특허 침해 고발 2건, 산업 디자인 침해고발 4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47건의 고발 중 43건을 조사했으며 26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2018년도에는 고발 36건 중 26건을 조사했으며 24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2019년도에 지식재산권청은 IndoXXI 나 LayarKac21같은 저작권을 위반한 많은 웹사이트 중 199개의 웹사이트 강제 폐쇄를 요청했다. 2018년도에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390개의 웹사이트 강제 폐쇄를 요청했다. 위의 수치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 소비가 상당히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2억 7천만명이 살고 있는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큰 시장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의 세계적인 공급처보다는 위조상품의 소비지가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ⅰ) 위조상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문제 의식이 약하다.

(ⅱ) 위조상품 생산자 혹은 매도자만 처벌하며 위조상품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제도적인 문제이다.

(ⅲ)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이나 해외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이나 매입이 매우 용이한 환경이다.

(ⅳ) 상품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보다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다.

(ⅴ) 위조상품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의 위조상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실한 수익을 올리려는 상인의 욕망과 진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2010 년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대학 사회 및 경제 연구원(Lemabaga Penyeledikan Ekonomi dan Masyarakat Fakultas Ekonomi dan Bisnis Universitas Indonesia/LPEM FEB UI)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대량의 위조상품이 시장에 공급되는 위조상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위조상품에 대한 수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홍보 부족과 소비자에 대한 보호 노력 부족이 인도네시아사람들에게 위조상품 소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다른 상품에 비해 비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3.5 %) 위조 의약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위조상품의 위험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중의 인식은 매우 낮다. 인조 가죽 상품에 대한 수요는 다른 상품에 비해 가장 높다(35.7 %).

인도네시아 소비자는 또한 위조상품을 사용하여 위반되는 규칙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위조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다고

알려져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요구를 충족하는 위조상품 공급 업체로도 신뢰를 받아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위조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관점과는 다르다. 저소득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가 위조상품을 소비하는 변명이기도 하다. 법적 프레임 워크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하게 단속하지 않는 정부 관리들이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위조상품 유통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더 강력한 위조상품 유통 촉진 요인은 위조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가 반영된 인도네시아 국민의 행동일 것이다. 위조상품의 존재는 일부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노점상에서 수도 외곽의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위조상품을 찾는다. 저품질 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위조 브랜드 상품을 찾는 이유는 진품과 유사한 위조상품을 착용하면 중상류층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욕망이 이 위조상품의 유통을 촉진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위조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면 인도네시아에는 여전히 위조상품이 많이 있을 것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만든 위조상품이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은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또 위조상품을 인도네시아에 들여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인도네시아로의 위조상품 반입은 관세청법에 정한 수입 절차에 따라 위조상품이 공식적으로 수입되기고 하고 공식적으로 통관된 위조상품은 시장에서 합법적인 상품으로 간주된다. 자카르타의 딴중 쁘리옥항(Pelabuhan Tanjung Priok)과 동부 자바 수라바야의 딴중 빼락(Pelabuhan Tanjung Priok) 등 인도네시아 주요 항구에서 수입업체가 수입면장으로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해가 된다.

많은 위조상품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상품은 (1) 무 알코올 음료, (2) 담배, (3) 가죽 상품, (4) 의복, (5) 살충제, (6) 약품, (7) 화장품, (8) 자동차 및 엔진 윤활유, (9) 소프트웨어, (10) 사무기기 및 전자 상품, (11) 조명 장 및 (12) 자동차 부품이다. 위조상품은 해당 산업 부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부문에도 해를 끼친다. 인도네시아 경찰청(Mabes Plori), 범죄수사본부(Badan Reserse Kriminal/Bareskrim), 특수범죄 및 경제범죄수사국(Direktorat Tindak Pidana Ekonomi dan Khusus)의 2011년부터 2016

년까지 5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지식재산권 사건 616건을 수사했으며, 이 중 상표 사건이 274건, 274건, 산업디자인 사건이 16건, 사업비밀 사건이 3건이다. 인도네시아의 일간지 Merdeka.com은 2015 년 3 월 30 일 오전 6시 15 분 뉴스에서 인도네시아는 이미 위조 상품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대량의 위조상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해롭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MIAP의 조사에 의하면 프린터 잉크, 의류, 가죽 상품, 소프트웨어, 화장품, 식음료 및 의약품의 위조상품이 제일 많다고 했다. 또 2020년 5월 20일 17시 30분 Detik.com뉴스의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손 소독제, 가방, 신발, 시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많은 위조 브랜드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자동차의 위조오일과 자동차의 위조부품도 있다고 했다.

III

오프라인 시장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01. 오프라인 시장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_ 15
1) 상표 등록 말소 청구 소송 제기 _ 15
2) 상표 등록 말소 소송 청구 사유 _ 15
3) 관할법원 _ 17
4) 소송 절차 _ 18
5)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_ 19
6) 대법원 판결문 집행 _ 19
7) 재심 청구(Peninjauan Kembali/PK) _ 20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01 오프라인 시장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

오프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조치가 모두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에 등록 된 유명 브랜드 상품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표 등록 말소 청구 소송 제기

이해관계 당사자는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20호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권 등록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상표권 보유자
- 검사
- 소비자를 대표하는 공식 단체/재단법인
- 공식 종교 단체

2) 상표 등록 말소 소송 청구 사유

상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상표 등록 불가 이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상표 등록 불가 이유를 어기고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 말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20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1. 국가 이념, 법규, 도덕, 종교, 도덕 또는 공공 질서에 반하는 행위 상표
2. 출원 중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상표
3. 출원 중인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품질, 유형, 크기, 유형, 사용 목적에 대해 대중을 오도 할 수 있는 요소 또는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호 식물 품종의 이름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한 상표

4. 생산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 혜택 또는 효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한 상표
5. 식별이 어려운 상표
6. 공공 이름 또는 공공을 상징하는 상표

상표법 제21조

1. 상표가 본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상표 전체가 동일한 경우 등록을 거부한다.
   1.1 다른 당사자가 이미 등록한 상표이거나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먼저 등록을 신청한 상표
   1.2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소유 한 잘 알려진 상표
   1.3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일한 유형이 아닌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당사자에게 속한 잘 알려진 상표
   1.4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
2.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한다.
   2.1 권리자의 서면 동의 없는 유명인의 이름, 사진 또는 다른 사람이 소유 한 법인의 이름 또는 약어
   2.2 권한 보유 기관의 서면 동의가 없는 국가 또는 국가 또는 국제 기관의 이름, 깃발, 상징 또는 상징 또는 상징의 이름 또는 약어의 사본이거나 유사한 상표다. 관할 당국의 서면 동의 없는 국가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나 공식 직인 또는 직인과 유사하거나 모조품
   2.3 신의성실하지 않은 등록 신청
   2.4 위에서 언급된 상표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장관령으로 정한다.
3. 또한 상표법 제 7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 말소 소송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77 조 제 2 항에서는 악의의 요소가 있거나 문제의 상표가 국가의 이념, 법규, 도덕, 종교, 품위,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시한 제한 없이 하시라도 상표등록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관할법원

상표 등록 말소 청구 소송 관할권은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에 있다. 상표법 제 83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 보유자 및/또는 등록된 상표권 라이선스 보유자는 본질적으로 또는 그 전체가 유사한 상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혹은 상표 사용에 관련된 모든 행위의 중지를 상업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 1 조 5 항 및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상표 보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의 형태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국가의 독점권 여부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0 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은 등록 상표 보유자는 제35조 제2항에 언급된 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등록 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 제 84 조 1 항에 따라 권리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생산, 유통 및/또는 거래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불법으로 생산 혹은 유통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인계를 상표권 보유자 혹은 라이선스 보유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제 20 호 제 84 조 2 항에 따라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인계를 집행한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는 5개 지역에 상업법원이 설립되어 있다. 자카르타 주의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 남부 술라웨시주의 마까사르 지방법원, 북부 수마트라주의 메단 지방법원, 동부 자바주의 수라바야 지방 법원 및 중부 자바주의 스마랑 지방법원에 상업법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상업법원의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중부 자카르타 상업법원: 자카르타 특별 주, 서부 자바주, 반텐주, 남부 수마트라주, 방가 벌리뚱주, 람풍주 및 서부 칼리만탄주
- 마까사르 상업법원 : 남부 술라웨시주, 동남 술라웨시주, 중부 술라웨시주, 북 술라웨시주, 서부술라웨시주, 고론딸로주, 말루꾸주, 북부 말루꾸주, 서부 빠부아주, 중부 빠뿌아주, 서부 빠뿌아주
- 수라바야 상업법원 : 동부 자바주, 남부 깔리만딴주, 중부 깔리만딴주, 동부 깔리만딴, 발리주, 서부 누사떵가라주, 동부 누사 떵가라주
- 스마랑 상업법원 : 중부 자바주와 족 자카르타 특별주

- 메단 상업 법원 : 아쩨특별주, 북부 수마뜨라주, 리아우주, 리아우 제도주, 서부 수마뜨라, 벙꿀루주와 잠비주

상표 등록 말소 소송 청구는 지역에 따라 소송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지역의 상업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상표법 제 85 조 제 1 항에 의거 피고의 거주지 또는 주소지 관할 상업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가 등록된 상표의 보유자라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외국 상표의 보유자는 등록 상표 보유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상업 법원에 등록 상표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중 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중부 자카르타 상업법원에 제기해야 한다(상표법 제 85 조 제 2 항). 등록 상표 말소 청구 소송은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상표법 제77조 제1항) 악의의 요소가 있거나 해당 상표가 국가 이념, 법령, 도덕, 종교, 도덕 및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등록 상표 말소 소송 청구는 시한이 없이 무기한으로 제기 할 수 있다(상표법 제 77 조 제 2 항).

4) 소송 절차

1. 상업법원은 해당 소송이 제기된 날 당일에 등록상표 말소 소송을 등록하고, 소송등록일 당일에 원고에게 서기가 서명한 서면 소송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2. 법원 서기는 소송이 등록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상업법원장에게 소송 등록을 보고해야 한다.
3. 상업법원장은 소송 등록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소송 청구 내용을 조사하고 재판부를 임명해야 한다.
4. 법원 집달리를 통해 상업법원은 소송이 등록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 출두를 요구해야 한다.
5. 재판부는 심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 승인을 얻어 최장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5)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Pengadilan Tinggi)에 할 수 없으며 대법원(Mahkamah Agung)에 파기청구(Kasasi)를 할 수 있다.

1.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기청구는 상업법원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파기 청구는 상업법원에 등록한다.
2. 파기 청구자는 상업법원에 파기청구일로부터 최장 14일 이내에 파기청구 소장(Memori Kasasi)를 상업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3. 상업법원은 파기 청구소장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피청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4. 피청구인은 상업법원으로부터 파기청구 소장을 송달 받은 14일 이내에 상업법원에 파기청구 카운터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5. 상업법원은 파기청구 카운터소장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파기청구 카운터 소장을 파기청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6. 상업법원은 파기청구자에게 파기청구 카운터소장을 송달한지 7일 이내에 파기청구 파일을 대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7. 대법원의 재판부는 파기청구 파일을 접수한지 90일 이내에 파기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8. 대법원은 공개 재판을 해야 하며 판결문에 판결문에 법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9. 대법원은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을 상업법원으로 송달해야 한다.
10. 상업법원의 집달관은 상법법원의 서기관으로부터 대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한지 2일 이내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상소인과 피상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6) 대법원 판결문 집행

상법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상표 등록 말소이면 법무부 장관은 공식 판결문 사본을 접수하는 대로 상업법원의 판결대로 해당 상표등록을 말소하고 상표 공보에 공시해야 한다.

7) 재심 청구(Peninjauan Kembali/PK)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Peninjauan Kembali/PK)가 가능하다.

1.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판결 후 상대가 위조 증거 혹은 거짓말로 승소했다고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있는 경우
   (ii) 판결 후 새로운 증거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증거물이 재판 과정에 발견되었더라면 판결에 영향을 미필 수 있는 증거물인 경우
   (iii)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했거나 청구한 내용을 초월해서 판결한 경우
   (iv) 청구한 사항을 법적인 설명 없이 판결하지 않은 경우
   (v) 같은 법원에서 같은 당사자들에게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르게 판결한 경우
   (vi) 판결에 판사의 명백한 실수 혹은 오류가 발견된 경우

2. 재심 청구에 대한 판결 시한은 대법원의 재심 청구 접수일로부터 180일이다.
3. 재심 판결문이 상표 등록 말소이면 법무부 장관은 공식 판결문 사본을 접수하는 대로 상업법원의 판결대로 해당 상표등록을 말소하고 상표 공보에 공시한다.

Ⅳ

상표등록 말소 청구 소송 판례

01. 상표등록 말소 청구 소송 판례 _ 23

1) 사건개요 _ 23

2) 자카르타 중부지방법원 상업법원의 판결 _ 26

3)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판결 _ 26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01 상표등록 말소 청구 소송 판례

대법원 판결 번호 : 619 K / Pdt. Sus-HKI / 2020 년 6 월 9 일

등록 상표 말소 소송 관련 사건은 2020 년 1 월 13 일 자카르타 중부지방법원 상업법원에서 상표 RUFF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 판결이다.

1) 사건개요

- 원고: 스페인에 적을 둔 스페인 회사 Original BUFF S.A.
- 피고: JEMMY SETIYUWONO 씨, 인도네시아 국민
  동부 Jawa주 Surabaya시 Gembong Sawah로 06 번지

1. 피고인 JEMMY SETIYUWONO 씨가 2011년 6월 13일 “RUFF”(25 류) 상표를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에 등록하다.
2. “BUFF”(25류) 상표권 보유자인 원고인 Original BUFF, S.A.가 JEMMY SETIYUWOMO 씨에 대하여 RUFF 상표 등록 말소 소송을 청구하다.

원고인 Original Buff, SA는 스페인의 법률에 따라 섬유 생산 업체 "Joan Rojas"가 1992 년에 설립 한 회사로, 스페인의 Franca, 16, 08700 IGUALADA(바르셀로나)에 소재하고 있으며,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에 있는 자회사는 Buff GMBH, 미국에 있는 Buff Inc, 캐나다에 있는 자회사는 Buff Canada Ltd.이며 영국에 있는 자회사는 Buff UK Ltd. 로서, 원고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상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이며 등록 상표 "BUFF"의 보유자이다. 원고 회사가 설립된 1992 년에 BUFF 브랜드와 함께 다기능 및 유연한 관형 헤드 커버, 스포츠 및 운동복, 셔츠, 스카프, 목도리, 신발, 모자 및 자외선 차단 모자에 대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등록은 BUFF 브랜드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알려 졌기 때문에 원고가 수행했다. 원고의 주요 상품은 극한의 추위, 바람 및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기능 관형 헤드 커버였다. 추가 정보는 원고의 웹 사이트 https://www.buff.com/ 및 https://buffindonesia.com/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ORIGINAL BUFF S.A.의 유통업체인 PT.(주식회사) SKELLY INDONESIA가 관리했다.

또한 원고의 상표 BUFF는 고품질이고 혁신적이며 친환경 상품으로 평판이 좋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수여된 표창 및 상으로부터 입증될 수 있다.

(ⅰ) 2005 년에 원고의 BUFF 상품은 ISPO AWARDS 2005를 수상했다. 이는 BEST RUNNING ACCESSORY https://outdoorindustry.org/press-release/buff-wins-runners-world-ispo-award-for-best-running-accessory/.를 보면 알 수 있다.

(ⅱ) 2007 년 원고의 BUFF브랜드 상품은 GEAR JUNKIE AWARDS, GREATEST GEAR OF 5YEARS를 수상 했다. 이는 https://gearjunkie.com/greatest-gear-of-5-years를 보면 알 수 있다.

(ⅲ) 2008 년 원고의 BUFF브랜드 상품은 AMERICAN ALPINE INSTITUTE.USA로부터 GUIDER 's CHOICE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http://blog.alpineinstitute.com/2008/08/aai-guides-choice-award-winners를 보면 알 수 있다.

(ⅳ) 2011년에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INTERNATIONAL FLY TACKLE DEALER로부터 BEST GENERAL APPAREL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https://www.anglingtrade.com/2011/08/19/angling-trade-and-midcurrent-announce-iftd-product-award-winners/ 를 보면 알 수 있다.

(ⅴ) 2011 년 원고의 BUFF브랜드 상품은 EOCA (유럽 야외 보존 협회)로부터 최초의 보존 챔피언을 수상했다. 이는 http://outdoorconservation.eu/news-detail.cfm?newsid=49를 보면 알 수 있다.

(ⅵ) 2012년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GEAR JUNKIE AWARDS에서 기여상을 수상했다.

(ⅶ) 2014 년에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FISH ALASKA MAGAZINE에서 EDITORS CHOICE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https://www.fishalaskamagazine.com/apparel-accessories-2017-editors-choice-award/를 보면 알 수 있다.

(ⅷ) 2014 년에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Backpacker Editors Choice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http://buffusa.com/life/blog/2014-10-14/wool-buff-receives-prestigious-backpacker-editors-choice-award.html를 보면 알 수 있다.

(ix) 2014 년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ISPO AWARDS 2014, BALACLAVA CROSS TECH BUFF를 수상했다. 이는 http://blog.buff.eu/todas-las-noticias/buff-gana-los-ispo-awards-2014를 보면 알 수 있다.

(x) 2017 년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FISH ALASKA MAGAZINE에서 EDITORS CHOICE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https://www.fishalaskamagazine.com/apparel-accessories-2017-editors-choice-award/를 보면 알 수 있다.

(xi) 2018 년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DESNIVEL MAGAZINE에서 PRODUCTO DESTACADO를 수상했다. 이는 https://www.desnivel.com를 보면 알 수 있다.

(xii)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and Testing in the Field로부터 OEKO-TEX STANDARD 100를 받았다.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상품에 대한 법적 요건을 따랐다. 유아용 의류 (class I)와 성인 및 어린이용 의류 인 Junior BUFF (Class II)에 2019 년 10 월 15 일까지 유효한 2005AN4661 와2019 년 12 월 15 일까지 유효한 OEKO-TEX STANDARD 100 No. 2008AN8313를 받았다.

(xi) 원고는 품질 및 환경 관리에 관한 ISO 규칙을 준수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춘 품질 관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ISO 9001 : 2015를 받고 환경 관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ISO 14001 : 2015를 받았다.

(xii)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유럽 연합, 미국 및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원고의 상점을 통해 판매되었고 70 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다.

(xiii) 원고의 BUFF 브랜드 상품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판매는 자카르타 중구에 있는 Lotte Shopping Avenue와 자카르타 북구에 있는 Kelapa Gading Mall과 자카르타 남구 Pondok Indah의 Gramedia Store와 Bali의 Denpasar에 있는 Gramedia Store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 https://buffindonesia.com/collections/buff-original에서 및 Tokopedia, Shopee와 같은 온라인 상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2) 자카르타 중부지방법원 상업법원의 판결

2020년 1월 13일 자 자카르타 중부지방법원의 상업법원 판결문
No. 60/Pdt.Sus-Mark/ 2019/PN.Niaga.Jkt.Pst.

원고의 BUFF 상표와 피고의 RUFF 상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원고는 BUFF 상표를 국내외에 등록했으며, 피고는 악의로(beritikad tidak baik) "RUFF" 상표를 등록하고 원고의 "BUFF" 상표의 명성에 편승했기 때문에 원고 전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자카르타 중부지방법원 상업법원의 재판부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피고의 RUFF 상표등록번호 번호 제 IDM000487454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원고의 BUFF 상표는 같은 25류 상품이며 원도의 BUFF 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악의로 등록한 등록번호 제 IDM000487454 호 RUFF 상표등록을 법무부 지식재산권은 말소하라. 그에 따른 모든 법적 결과는 피고에게 있다.

3)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판결.

2020년 6월 9일자 인도네시아대법원의 판결문 제 619 K/Pdt. Sus-HKI/2020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i) 상소(Kasasi) 이유는 하급법원의 법률 적용 오류, 관련 법규 위반 또는 과실로 제한하고 있는 바 하급법원에서 증거물의 조사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것은 상소 이유로 받아드릴 수 없다. 또한 대법원에 관한 법률 1985년 제 14호 제 30조와 대법원에 관한 개정 법률 제 2004년 제 5호 및 대법원에 관한 2차 개정 법률 2009년 제3호에서 규정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ii) 하급법원의 법률 적용(Pertimbagan Hukum)과 2020년 2월 7일자 상소인의 상소장과 2020년 2월 26일 피상소인의 반박 항소장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하급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지 않는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소인이 RUFF 상표 등록 자격이 과연 있느냐이다.
- 본질적으로는 상소인의 RUFF 상표 등록 신청 목적은 널리 잘 알려진 피상소인의 BUFF 상표에 편승하기 위해 악의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상소인의 RUFF 상표는 잘 알려진 피상소인의 BUFF 상표와 발음이 유사하다.
- 상고인의 RUFF 상표 등록 신청은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2016 년 법률 제 20 호 제 21 조 (3)에 규정한 악의의 신청으로 본다.
- 위의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3일 자 자카르타 중부지방법원 상업법원 의 판결문 제 60 / Pdt. Sus-Merek / 2019 / PN.Niaga.Jkt.Pst 호는 법규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고 상소인 JEMMY SETIOYUWONO의 상소는 대법원 재판부에서 기각했다.

V

법원의 잠정 처분결정서(Penetapan Sementara)

01. 법원의 잠정 처분결정서(Penetapn Sementara) _ 31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01 법원의 잠정 처분결정서 (Penetapan Sementara)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제 94 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손상된 등록 상표 보유자는 다음과 같이 상업법원의 판사에게 잠정처분결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표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유통 시장 진입 금지

2016 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제 94 조 a의 설명에 유통 시장 진입 금지는 상표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수입 금지도 포함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증거의 보존 신청

3) 범법 혐의자 의한 증거 인멸 금지 신청

2016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제 94 조 c 항의 설명에서 상표법 범법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방지하기위한 것임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4) 구비요건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 범법 중지 신청이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요건을 첨부해야 한다.

4.1 상표권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2016 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제 95 조 a의 해설에서 상표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상표등록증서(Sertifikat Merek)라고 설명하고 있다.

4.2 상표권 침해가 있다는 초동 증거

4.3 증거 목적으로 요청한 검색, 수집 및 확보한 상품 및/또는 문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서 -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제95조 문자 c의 설명에서 상표 침해의 결과로 의심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4.4 잠정 처분 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가치에 비례한 현금 및/또는 은행 보증의 형태 보증서 제출

4.5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제96조는 잠정 처분 결정서 대응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잠정처분 결정서 신청이 제 95 조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업법원의 서기는 잠정처분결정서 신청을 접수기록하고 접수 시간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상업법원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 상업법원장은 잠정처분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신청서를 상업법원 판사를 임명한다.
- 임명된 상업법원 판사는 임명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신청을 받아드릴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 받아드리는 경우에는 잠정처분 결정서를 발부해야 한다.
- 잠정처분결정서는 발부일부터 24 시간 내에 법원의 잠정처분결정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 잠정처분결정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들어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 잠정처분결정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발부일로부터 최장 7 일 이내에 잠정처분결정 대상자를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 잠정처분결정 대상자는 소환장을 받은 지 7 일 이내에 상표권 침해에 관한 잠정처분결정에 관련하여 설명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잠정처분결정서 발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업법원 판사는 잠정처분결정서에 대하여 재확인 혹은 말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 잠정처분결정서에 대하여 재확인 판결이 난 경우에는 보증금은 잠정처분결정서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 잠정처분결정서 신청자는 잠정처분결정서 대상자에게 상표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잠정처분결정서 신청자는 잠정처분결정서 대상자를 상표권 범법 혐의로 경찰 혹은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법무부 지식재산권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다.
- 잠정처분결정서에 대하여 기각 판결이 난 경우에는 잠정처분결정 신청자가 법원에 건 보증금은 잠정처분결정 신청 대상자에게 양도한다.
- 잠정처분결정에 관한 규정은 지리적표시권 침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VI

대안(Alternatif)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01. 대안(Alternatif)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_ 35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01 대안(Alternatif)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2016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제 93 조에 상표 분쟁을 대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소송 이외에 등록 상표 사용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중재 또는 대안 분쟁 해결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 95 조의 규정에 대한 설명에서 "대안 분쟁 해결"의 의미에는 협상, 중재, 조정 및 당사자가 선택한 기타 방법이 포함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WIPO) (2008:22)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특히 상표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은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덜 형식적이며 절차가 법원 절차보다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중재는 국제적으로 구현하기가 더 용이하다. 중재의 이점은 관련 당사자가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계속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협력할 수 있으며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상표 사용에 관한 분쟁 당사자 간의 대안 분쟁 해결이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 지거나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평화 조정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권한 있는 경찰이 포함되기도 한다.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발행된 인쇄 매체 또는 전국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표 상품 또는 상품을 사칭한 분쟁 당사자들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다.

VII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형사 고소

01.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형사 고소 _ 39

1)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자 _ 39

2) 형사 고소처 _ 39

3) 경찰에 형사 고소 _ 39

4) 경찰에 형사고소 처리 절차 _ 41

5) 법무인권부 지식재산권청에 형사고소 _ 44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01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형사 고소

1)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자

(1)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자 및/또는 라이선스 보유자
(2) 저작자 및/또는 라이선스 보유자
(3) 전국 단위 집단 관리 기관
(4) 지역 집단 관리 기관
(5) 지식재산권 협회
(6) 지식재산권 보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7) 지식재산권 보유자 및/혹은 라이선스 보유자의 법정대리인

2) 형사 고소처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형사 처리는 i) 경찰에 형사 고소하는 방법과 ii) 법무부 지식재산권청 수사 및 해결국에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3) 경찰에 형사고소

한국에서는 수사권이 검찰에 있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으며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경찰 조직은 행정구역을 따라 군대조직처럼 중앙에 경찰 사령부(경찰청)가 있으며, 주에 지방경찰청이 있고, 시/군/구 단위에 경찰서가 있으며, 동/면 단위에 경찰지서가 있으며, 그 아래에 필요한 곳에 파출소를 두고 있다. 경찰사령관(경찰청장)은 4성장군인 경찰 대장, 지방경찰청장은 소장, 경찰서장은 대령, 경찰지 서장은 소령이다. 이 경찰조직 중에 지식재산권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사관이 있는 곳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이며 그 이하 조직에는 지시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수사관이 없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는 소재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경찰창이나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는 경찰청에 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법을 위배했다는 물적 증거가 없으면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시 지식재산권을 위배했다는 물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표등록증 사본, 위조상품 샘플 혹은 사진, 위배자 성명 및 주소 제출이 필요하다. 2016 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에 규정된 상표 위조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0조

1.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된 상표 전체를 위조하여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 및 / 또는 유통한 자는 징역 최장 5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2,000,000,000.- (20 억 루피아)에 처한다.
2.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위조하여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 및 / 또는 유통한 징역 최장 4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2,000,000,000.- (20 억 루피아)에 처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물품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하거나 인명 사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징역 최장 10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5,000,000,000.00 (50 억 루피아)에 처한다.

*제101조

1.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전체적으로 동일한 지리적 표시를 위조하여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상품에 권리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징역 최장 4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 2,000,000,000. - (20 억 루피아)에 처한다.
2.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위조하여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상품에 권리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징역 최장 4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 2,000,000,000. - (20 억 루피아)에 처한다

*제102조

유통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가 제101조 혹은 제102조에 규정한 범죄 상품 혹은 서비스라는 것을 인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한 자는 금고 최장 1년 및/또는 벌금 최고 Rp. 200,000,000. - (2 억 루피아)에 처한다.

* 위에서 설명한 제 100 조, 제101조 및 제 102 조에 규정한 상표 혹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범죄는 일반범죄(Delik Umum)가 아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국가의 수사권이 발생하는 친고죄(Delik Aduan)이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이다.

*제103조

제 100 조에서 제 102 조까지의 범죄 행위는 친고죄이다.

A. 경찰에 형사고소 처리 절차

(i) 형사 고소(Pengaduan Pidana)

피해자인 상표권 등록증서 보유자나 라이선스 보유자는 본인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같이 고소할 수 있다. 형사고소처는 지방경찰청(Polda) 혹은 경찰청 범죄수사본부(Bareskrim Mabes Polri)의 경찰종합봉사센터(Sentra Pelayanan Kepolisian Terpadu/SPKT)에 위조 상표 의심이 가는 사람을 형사고소 할 수 있다.

형사고소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등록증서, 범죄 행위의 결과로 의심되는 상품 및 상표권 등록증서에 표기되어 있는 진짜 상품(등록상표)도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소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ii) 내사(Penyeledikan)

형사고소를 접수하면 바로 수사(Penyidikan)을 할 수도 있고 내사(Penyeledikan)를 먼저 할 수도 있다. 증거가 불충분하는 경우에 통상 고소인, 피고소자와 증인과 피고소자와 물증을 조사해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로 승격시킬 수 있다. 내사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

(iii) 수사관(Penyidik)

상표 위조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1981 년 법률 제 8 호(Kitab Undan-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한다. 형사 소송법 제 1 조 2 항에 따리 수사는 발생한 범죄 행위를 명확히 하고 용의자를 찾기 위해 그 증거로 증거를 찾고 수집하기 위해 수사관이 법에 규정된 방법과 측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형사 소송법에 따라 수사관은 형사 소송법 제 1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에 의해 특별 권한을 부여 받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Polisi Republik Indonesia/POLRI)이 수행하며, 별도로 특정 민간인 공무원

(Penyidik Pegawai Negeri Sipil/PPNS)에 의해 수사가 수행된다. 경찰 수사관은 경찰청장(KAPOLR) 임명한 최저 계급 경찰소위(Inspektur Polisi /Ipda)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다. 수사관 외에 부수사관(Penyididk Pembantu)이 있으며 부수사관은 하사관 급이다.

(iv) 조사 및 조서(Berita Acara Pemeriksaan/BAP)

수사관은 먼저 고소인을 조사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나타나는 증인 혹은 참고인을 조사하고,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한다(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인은 한국어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글 통역 준비 의무는 경찰에 있으나 한글-인도네시아어 통역 제도 자체가 없어서 편의상 피조사자가 통역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피조사자는 또한 변호인 동반 조사를 받을 권리도 있다. 규정상으로는 변호사는 통역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수사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통역이 가능하다.

(v) 수색 및 압수(Pengeladahan dan Penyitaan)

증인 및 용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파의자의 시설에 대하여 강제 수색을 할 수 있으며 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vi) 구속(Penahanan)

피의자가 징역 최고 5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하지 않으면 i)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염려되거나, ii) 재범이 우려되거나, iii)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수사관이 판단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수사관의 재량이다. 현지 형사소송법 상 수사 단계 구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 1차 구속 기간 최장 20일, 결정권자: 수사관
- 2차 구속 기간 최장 40일, 결정권자: 검사
- 3차 구속 기간 최장 30일, 결정권자: 지방법원장
- 4차 구속 기간 최장 30일, 결정권자: 지방법원장

(vii) 사건 검토 관계자 회의(Gelar Perkara)

수사관이 수사한 수사에 대하여 관련 수사국 산하 각 과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수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이다. 고소인, 피고소자, 증인, 참고인 및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으며 초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 초기에 열수도 있고 수사 중반에 열수도 있고 검찰로 이첩하기 전에 열수도 있다. 통상은 검찰에 이첩하기 전 수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수사 결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viii) 사건 파일(Berkas Perkara)

수사가 일단락되면 형사고소자에 대한 신문조서,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피의자에 대한 조서 및 증인 신문사건 파일을 만들어 수사 결과 전체를 한 파일로 만든다.

(ix) 수사 중단 결정(Surat Perintah Penghentian Penyiidkan/SP3)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관은 수사 개시를 검찰에 통보 의무가 있다. 수사 결과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소자가 행한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수사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수사 중단을 통보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 증거 불충분
-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범죄 구성 요소 미충족)
- 고소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했을 경우
- 피고소자 사망
- 공소 시효 만기

(x) 검찰에 이첩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2단계로 나눠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다. 1단계는 사건 파일 사본을 먼저 검찰에 보낸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파일을 검토해보고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보완 요청을 하거나(P-19)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는 통보서를 보낸다(P-21). 경찰이 검찰로부터 P-19를 받으면 신속하게 보완 수사를 해야 하며 P-21를 받으면 사건 파일 원본과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에 넘긴다.

4) 법무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 지식재산권청 (Direktorat Jenderal Hak Kekayaan Intelektual)에 형사고소

법무인권부장관령 제M.HH-05.OT.01.01 2010호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 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조직된 지식재산권 수사국(Direktorat Penyidikan)은 지식재산권청장의 기술 정책에 따라 지적 재산권 범죄 수사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를 제공하며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i) 조사국의 조직

- 고소고발부국(Subdirektorat Pengaduan)
- 조치 및 모니터링부국(Subdirektorat Penindakan dan Pemantauan)
- 행정과(Subbagian Tata Usaha)
- 분야별 담당관(Kelompok Jabatan Fungsional)

(ii) 고소고발부국의 조직

지식재산권 분야 범죄 고소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하는 고소고발부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고소고발 접수와 고소고발접수과는 고소고발 접수, 사건 보고서 작성, 정보 검색 및 수집 및 수사 명령을 위한 자료 준비 업무를 담당한다.
- 수사행정과 수사행정과는 지적 재산권 분야의 범죄 수사에 대한 자료 준비 및 수사 행정을 담당한다.

(iii) 조치 및 모니터링부국의 조직

재산지식권 분야 범죄에 대한 조치에 대한 협력, 감시 및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조치 및 모니터링부국은 조치과와 모니터링과로 구성되어 있다.

(iv) 지식재산권청 수사국에 근무하는 수사관은 모두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이다.

형사소송법 제6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이 공무원 수사관이다. 민간인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경찰 수사관과 같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형사 고소고발을 접수한다.
- 범죄 발생 시 필요한 우선 조치를 취한다.
- 범죄 의심이 가는 사람을 검문검색한다.
- 체포, 구속, 수색 및 압수한다.
- 서류를 검사하고 압류한다.
-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 피의자 혹은 증인으로 출두를 명령한다.
- 수사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 수사를 중단한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2016 년 법률 제 20 호 제 99 조 2 항에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상표 분야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고소 또는 설명에 대한 사실성을 검토한다.
- 피고소자 또는 피고발자 조사한다.
- 상표 분야 범죄 관련자에게 조사 및 증거물 요구한다.
- 상표 분야 범죄와 관련된 장부, 기록 및 서류 조사한다.
- 상표 분야 범죄 증거물인 장부, 기록 및 기타 문서가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수색 및 조사를 한다.
- 상표 분야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재 및 물품을 요구한다.
- 상표 분야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한다.
- 상표 분야 범죄자에 대한 체포, 구속, 수배 및 출국금지 조차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 상표 분야 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 한 경우 수사 중단 결정을 한다.

그 외에도 수사 시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 수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vi)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은 수사 개시를 경찰 수사관에게 통보하며 경찰 수사관은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의 수사 개시를 검찰에게 통보한다.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의 수사결과도 경찰 수사관을 통해 검사에게 이첩한다.

VIII

온라인 시장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01. 온라인 시장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_ 49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01 온라인 시장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2억 7천만명의 인구에 약 18,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의 전자 상거래 산업의 잠재력은 과소 평가될 수 없다. Ernst & Young의 분석 데이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출 가치가 매년 40 % 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9,340 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와 7,100 만 명의 스마트 폰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 검색과 채팅뿐만 아니라 대도시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천만 명의 중산층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인도네시아의 전자 상거래를 계속 성장시키는 이유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존재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에서 상품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고 파는 관행을 만들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위조 또는 불법 상품이 무책임한 당사자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쉽게 유통되고 거래되기도 한다. 소비자가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및 위조품의 유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다양한 위험이 발생한다.

전자 상거래에서 위조품이 유통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전자 상거래에서는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둘째, 위조 신원으로 또한 사기성 거래자들이 위조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셋째, 신용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처리 또는 구매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팔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소비자, 전자 상거래 플랫폼 보유자, 정보통신부("Menkominfo"), 경찰과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현지 실정은 아직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막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위조상품의 상표권 보유자는 경찰이나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에 형사 고소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것이다.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책이나 오프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책은 대동소이 하다.

IX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01.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_ 53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01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령은 네덜란드 식민통치기인 18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는 1844년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률을 도입했으며 그 후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는 상표법은 1885년에 제정하고, 특허법은 1910년에 제정하고, 저작권법은 1912년에 제정했다. 1888년부터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회원이었으며 1914 년부터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의 회원이 되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기간에도 지식재산권 부문의 모든 법률과 규정은 여전히 유효했다.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하고 1945년 헌법의 과도기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네덜란드 식민지 유산의 모든 법률과 규정은 1945년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상표권법과 저작권법은 계속 유효했지만 네덜란드 식민 정부가 만든 특허법은 신생 독립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했다. 네덜란드 식민정부가 만든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 출원은 Batavia(현 자카르타)에 위치한 특허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지만 특허 출원 심사는 네덜란드의 특허청(Octrooiraad)에서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이었다. 1953년 인도네시아 사법부 장관(Menteri Kehakiman, 현 법무인권부 장관/Menkumham)은 특허에 관한 최초의 국가 규정, 즉, 사법부 장관의 공시 No. J.S. 5/41/4로 국내 특허 출원에 관한 규정으로 공표하고, 사법부장관 고시 No. J.S. 1/2/17로 해외 특허 출원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1961년 10월 1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덜란드 식민지 상표법을 대체하기 위한 회사 상표 및 상업상표에 관한 법률 1961년 제 21호를 공포했으며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발효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지식재산권 법률이다. 1961년 상표법의 제정은 위조상품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961년 상표법 발효일인 11월 11일을 국가지식재산권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1979년 5월 10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 제10호에 의거하여 파리 협약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스톡홀름 개정판 1967)]을 비준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여러 조항, 즉 제 1조부터 12조까지 또 제28조 (1)항에 대한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파리 협약을 전적으로 준수하지는 않았다. 1982년 4월12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덜란드의 저작권법 유산을 대체하기 위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 1982년 제 6호 ("1982 저작권법")을 공포했다. 이 저작권법 제정은 과학, 예술 및 문학 분야의 창작 및 보급을 통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1986년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시스템 근대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10호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별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대통령령 34팀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대통령령 34팀의 주된 임무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가 정책 수립, 지식재산권 부문의 법률 및 규정 초안 작성, 관련 정부 기관, 법 집행관 및 더 넓은 지역 사회 간의 지식재산권 시스템 사회화를 다루는 것이다. 대통령령 34 팀은 인도네시아 특허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인 협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했다. 대통령령 34팀은 1982년 특허법안을 완성하고 1989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허법을 공포했다. 1987년 9월 1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작에 관한 1982 법률을 폐기하고 저작에 관한 법률 1987년 제7호를 공포했다. 1987년 저작권법 제정 설명에서 국민의 사회생활을 위협 하며 창의력을 파괴하는 저작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구법을 폐기하고 새법을 제정하게 댔다고 설명하고 있다. 1987년 저작권법 공포 후 저작권 분야에서 여러 쌍무 협정에 서명했다.

1988년 대통령령 제 32호로 법무부 법무행정청 산하에 있던 특허 및 상표국을 저작권 특허 상표청으로 승격시켰다. 1989년 10월 13일 국회는 특허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1989년 11월 1일 특허에 관한 법률 제6호로 공포했다. 1989년 특허법이 공포되면서 특허 시스템이 중요하고 인도네시아 국가에 대해 유익한가 오랜 논쟁이 끝났다. 1989 년 특허법을 제정하는 고려 사항에 기재되어 있듯이 특허에 대해 법적 보호를 하고 기술 발명을 위한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허 분야의 법적 도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 발전, 특히 산업 부문에서 기술이 매우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특허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의 국내 반입을 촉진하기위한 목적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때문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92년 8월 2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상표법을 폐기하고 상표에 관한 법률 제19호를 공포하고 1993년 4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1994년 4월 1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Agre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를 포함한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에 서명했다. 3년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을 대폭 개정했다.

저작권법은 1982년 법률 제6호, 1987년 개정 후 1997년 법률 제12호로 바뀌고, 특허법은 1989년 특허법이 199년 법률 제13호로 바뀌고, 상표법은 1992년 상표법이 1997년 법률 제14호로 바뀌고, 2000년 말에 3개의 새로운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되었으니, 상업비밀에 관한 법률 2000년 제30호, 산업디자인에 관한 법률 2000년 제31호와 전자화로 디자인에 관한 법률 2000년 제32호이다.

지식재산권 부문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TRIPS 협정과 조화시키기 위해 200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7년 특허법을 특허에 관한 2001년 법률 제14호로 바꾸고 상표권법은 1997년 상표권법을 상표에 관한 법률 2001년 제15호로 바꿨다. 2002년 중반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7년 저작권법을 저작권에 관한 2002년 법률 제19호로 바꿨다. 다시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2년 저작권법을 저작권에 관한 법률 2014년 제28호로 고체하고 2년 후 2001년 특허법을 특허에 관한 법률 2016년 제13호로 바꾸고, 2001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을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20호로 바꿨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TRIPs를 포함한 국제협약에 규정한 의무사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분야 법령을 부단하게 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제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X

지식재산권분야 현지 법률전문가

01. 지식재산권분야 현지 법률전문가 _ 59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Indonesia

01 지식재산권분야 현지 법률전문가

현지 제도상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는 변리사(Konsultan Hak Kekayaan Intellektual Terdaftar/Konsultan HKI Terdaftar)이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는 변호사(Advokat)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유통 피해자인 외국인이 현지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배상 추진이나 형사고소를 직접 할 수도 있겠으나 현지상황이 외국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변리사 자격증과 변호사 자격증 둘 다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처리나 민사소송 경험이 많은 현지 변리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소재 국가 지원

1. 지재권 상담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 현지 IP-DESK 전담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 소개, 지재권 출원 절차, 지재권 침해 · 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

[상담방법]

IP-DESK	현지 IP-DESK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현지 전문로펌을 통한 지재권 전문상담

2. 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 디자인 출원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 중견기업(중소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필리핀
상표한도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디자인 한도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지원비율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지원건	신청기업별 연간 8건(국가제한 없음)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지원시 선택한 법률사무소와 상표·디자인 출원 계약
신청기업	출원신청	기업부담금 납부 및 출원신청
KOTRA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3.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 중견기업(중소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 네시아	필리핀
지원내용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지원건수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지원한도	$10,000/건(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공동신청시 기업수만큼 한도증액								
지원비율	최대 70% 지원 (중복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50%→30%)								

※ 협의체 공동신청은 한류편승 관련 사건 우선지원 예정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법률사무소(침해 조사 기관)와 계약
신청기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기업부담금 납부 및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침해감정서 결과보고
KOTRA	비용지원	IP-DESK가 결과보고서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지원서비스 안내」▶「해외진출지원」▶「해외투자진출」▶「지식재산권보호」페이지 내「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권역	지원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유럽 및 중동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북미 및 중남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1. 법률자문 지원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 지원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 · 중견기업
- IP-DESK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 일부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출원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 4건/1社 (국가별 통합, 출원·상담 지원 통합)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 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법률자문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법률자문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피침해 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 지원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社 (침해조사, 행정단속 동시신청시 1건 인정)
행정단속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침해조사 연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피침해 실태조사(단속지원)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실태조사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실태조사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현황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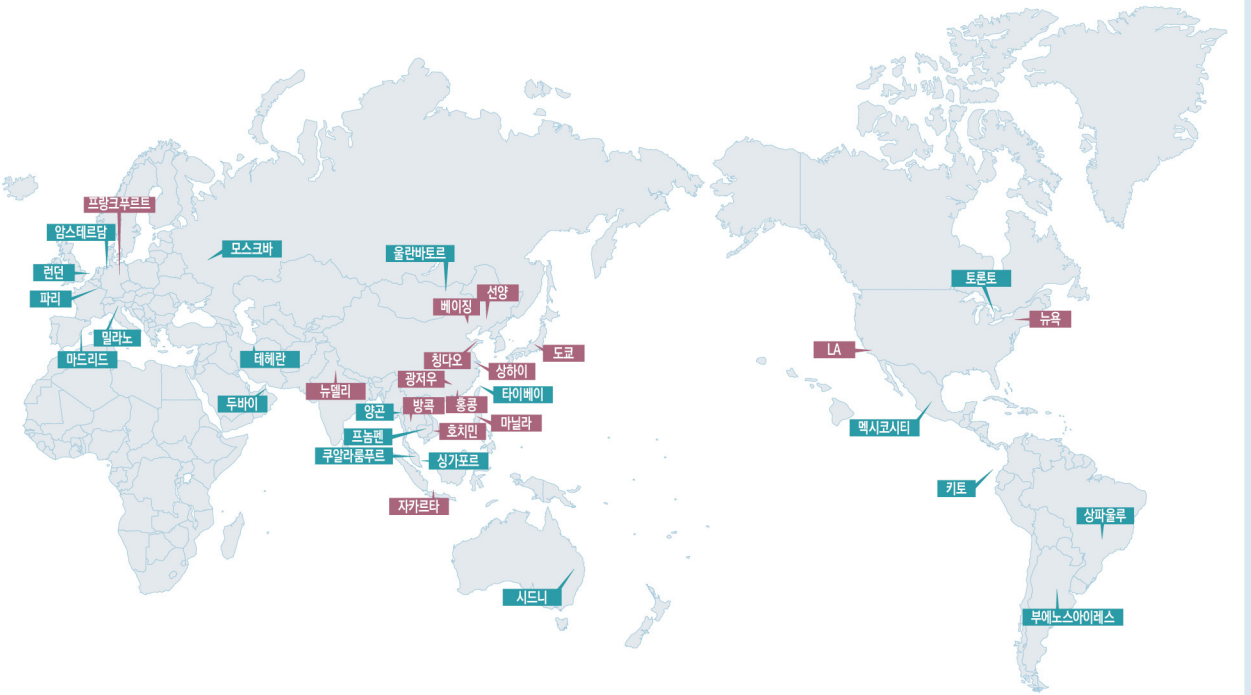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9개국 15개소
IP-DESK 미소재 국가 사업수행 : 20개국 20개소

IP-DESK 연락처

국가		전화	이메일
미국	LA	1-323-954-9500(142)	laipdesk@kotra.or.kr
	뉴욕	1-646-918-5594	graceahn@kotra.or.kr
독일	프랑크푸르트	49-69-2429-9299	donghee.lee@kotra.or.kr
일본	도쿄	81-3-6273-4638	dhwon@kotra.or.kr
태국	방콕	66-2-035-1558	bkk_ipdesk@kotra.or.kr
베트남	호치민	84-28-3822-3944(134)	seaegghr@kotra.or.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574-1522(Ext. 140)	juheelee@kotra.or.kr / juheejkt@gmail.com
필리핀	마닐라	63-2-8894-4084	manila@kotra.or.kr
인도	뉴델리	91-124-4628-500(514)	lsoojung@kotra.or.kr

국가		전화	이메일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47)	ipkotra@kotra.or.kr
	상하이	86-21-5108-8771(118)	shanghaiip@kotra.or.kr
		86-21-5108-8771(116)	MF.Jin@kotra.or.kr
	칭다오	86-532-8388-7931(209)	qdxuxiang@kotra.or.kr
	광저우	86-20-2208-1600(1405)	shane.bai@kotra.or.kr
	선양	86-24-3137-0770(813)	ipdesksy@kotra.or.kr
	홍콩	852-3465-2921	hkg_ipdesk@kotra.or.kr

IP-DESK 미소재 국가 연락처

해외지재권실 : 02-3460-3351, ip-desk@kotra.or.kr

인도네시아
위조상품 대응 가이드

KOTRA자료 20-234

발 행 인 : 권 평 오
발 행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자카르타무역관(IP-DESK))
발 행 일 : 2020년 12월
주 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02-3460-3357
홈페이지 : www.kotra.or.kr
저 자 : 이승민 변호사 · 변리사
YSM & Partners

ISBN 979-11-6490-560-7 (93320)
979-11-6490-561-4 (95320)(PDF)

Copyright ©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